

「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과 「스포츠클럽법」 제정에 따라 체육진흥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체육단체 지원 등의 재정 집행 투명성 및 청렴도를 제고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스포츠클럽법」 제정에 따른 스포츠클럽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전문체육, 생활체육, 장애인체육, 학교체육, 노인체육, 스포츠복지 진흥사업 예산지원 근거 명확화(안 제15조~제20조)
-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명문화(안 제21조)
-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명문화(안 제25조)
-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(안 제26조)
- 구미시 체육회 운영에 관한 지도·감독 명문화(안 제27조)
- 선수 등의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근거 마련(안 제2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스포츠클럽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상위법 제정에 따른 신설 규정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국민권익위원회의 「부패영향평가업무 이행지침」을 참조하고 경상북도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우리 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, 체육단체 지원사업과 체육진흥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와 보조금 사용 방법과 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정지원 및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시키는 동시에, 「스포츠클럽법」의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들을 반영하는 본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.